

19. 세무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서비스

1. 지방세 부과·징수

- 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 개시일 7일 전까지 납부서가 민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담당자와 신속한 상담을 위해 담당실명제를 실시하여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나. 착오부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부과를 통하여 부과 오류율이 제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착오부과 시에는 즉시 경정 조치하고 환부금이 있을 경우 확인 후 2일 이내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라. 매년 달라지는 개정 지방세법의 경우 매스미디어(신문, 유선방송, 리플렛, 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1개월 전에 사전 홍보하여 납세자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지방세 부과·징수시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3. 세무조사 시에는

가. 민원인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통지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으며,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으며, 조사결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드리겠습니다.

4. 세무민원 처리기한 단축서비스 제공

연번	민원명	법정처리기한	현재처리기한	이행목표처리기한
1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10일	10일	7일
2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	3일	3일	1일
3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7일	7일	5일
4	지방세 감면신청	5일	5일	3일

2.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1.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서비스

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자신고·납부, 과오납 환부신청,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가. 금융기관, 위택스를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납기 마감일에 민원인의 계좌에서 지방세가 자동출금되어 연체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금융결제원 및 위택스 인터넷 납부 서비스

가. 금융결제원 및 위택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가. 납세자 개인별 무통장입금 전용 계좌인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창구, CD/ATM, 인터넷 등 모든 금융거래 매체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지방세 납부서비스

가.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서상의 전자납부 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 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강화

1. 지방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 조세 형평의 정신에 의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하게 납부한 민원인들만 손해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징수율을 95%까지 높이겠습니다.

나. 부동산·유채동산 등 체납자의 모든 재산(지방세 체납액에 상당한 가액)이 압류 또는 공매 처분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됩니다.

다. 급여·예금·보험·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이 압류·인출 됩니다.

라. 인가·면허·신고 등 각종 관허 사업 제한을 받습니다.

2. 민원인에게 알려드리는 (형사별) 정보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민원인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또는 여권 발급을 제한받습니다.

4. 시정 및 보상조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조항, 세율 적용 잘못 등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드렸을 경우 정중히 사과드리고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 하겠습니다.

5.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취·등록, 면허세, 세무조사	세무과 도세팀	3677-2181~2184	2150-1512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무과 시세팀	3677-2961~2963	
재산세, 과세표준 등	세무과 과포팀	3677-2186~2189	
(부)동산 체납처분 등	세무과 징수팀	3677-2191~2193	2150-1533
세입관리, 세외수입 등	세무과 세입관리팀	3677-2196~2197	

6.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항

1. 민원인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에 정확한 과세자료 제출 및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